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4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18200 부당이득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9. 9.
판 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163,490원 및 이 중 190,114,470원에 대하여는 2018. 6. 18.부터, 2,049,020원에 대하여는 2018. 6.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redacted]구 B 소재 부동산을 C, D, E 등과 함께 F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합계 6,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거액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원고에게 양도차익을 몰아주고, 나머지 C, D, E는 양도차익을 거의 얻지 못한 것으로 꾸민 다음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자가 받은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관서에 양도소득을 과소 또는 과대 신고하였는데, 원고는 위 신고에 따라 2015. 1. 피고로부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8,651,770원, 89,514,640원을 각 부과받았고, 2016. 11.경 및 2017. 12.경 두차례에 걸쳐 이를 완납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5.경 국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를 68,051,940원으로 재산정하여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정상 납부액 68,051,940원을 제외하고 환급가산금을 포함시켜 192,163,490원[= 190,114,470원(= 168,651,770원 + 89,514,640원 - 68,051,940원) + 환급가산금 2,049,020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

다. 그런데 [redacted]세무서장은 2018. 5. 3. 원고가 체납하고 있는 2,715,482,37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지방세 환급금 중 현재 및 장래 발생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4

였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27. 이에 기하여 [redacted] 세무서에게 위 192,163,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 납부한 지방소득세에서 원래 납부하여야 할 지방소득세를 뺀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을 피고에게 과다하게 납부한 결과가 되어 피고는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중 190,114,470원에 대하여는 감액결정이 있었던 2018. 6. 19.부터, 환급가산금 2,049,020원에 대하여는 2018. 6. 27.부터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에 기하여 [redacted]세무서에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redacted]세무서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압류채무자인 원고는 소송수행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설령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라 환급금 상당의 돈을 [redacted]세무서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급금 상당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부당이득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4

실하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이는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참조].

[redacted]세무서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 및 통지가 있었던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하면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3282 판결 참조),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4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